정보명	포장재 정의 및 기준
주요내용	1. 국내 포장재 정의 및 기준 2. EU 포장재 정의 및 기준 3. 일본 포장재 정의 및 기준
참고자료	국내외 EPR제도 비교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,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(2014)

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
Korea Packaging Recycling Cooperative

포장재 정의 및 기준

1. 국내 포장재 정의 및 기준[1)]

가. 포장재 정의

❍ "제품의 수송, 보관, 취급,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·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" (자원재활용법 제2조 14호)으로 제품과 분리되거나 혹은 제품을 다 소비한 후에는 그 용도가 불필요해지는 것을 말함

- 포장재는 제품을 직접 감싸기 위한 포장으로 대개 제조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품에 시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포장재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구입하기 전까지의 수송 및 보관을 위한 포장재, 대형마트 또는 슈퍼마켓 등에서 여러 개의 관련 제품을 묶거나 보너스 경품 같은 묶음판매상품을 싸는 2차 포장재 등이 있음
- 포장재의 재질에 따라 종이, 금속, 유리, 합성수지로 구분되며, 합성수지는 단일재질(페트, PP, PE, PS, EPS 등)과 복합재질로 구분됨

나. 용기류, 시트류, 필름류 구분(합성수지 재질 포장재)

❍ 용기류

- 한국산업표준(KS) 내 포장용어[2)]로 물품 또는 포장물품을 넣을 수 있는 그릇의 총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, 일반적으로 밀폐의 기능을 가진 포장재로써, 식료품, 세제, 화장품 용기 등 뚜껑이나 마개를 가진 형태가 많지만, 레토르트 식품, 신선육의 포장 등에 이용되는 종이, 펄프, 플라스틱, 알루미늄 박 등 비교적 강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뚜껑 없는 접시형의 트레이(접시) 또한 용기에 포함됨

❍ 시트류

- 용기류와 필름류의 중간 성격을 지닌 포장재로써 두께가 0.25㎜ 이상인 플라스틱의 얇은 판 모양[3)]의 포장재를 말한다. 과일이나 비스킷, 계란의 포장 등

1) 플라스틱 제품·포장재의 EPR 대상품목 확대방안 연구, (사)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(2013)
2) 한국산업표준(KS) 규격번호 KST1001-용어번호 1014 용기(container)
3) 한국산업표준(KS) 규격번호 KST1001-용어번호 2102, 플라스틱시트(plastic sheet)

식품의 모양으로 성형하고 그 용기에 식품을 넣어 포장하는 콘투어 포장이나, 건전지, 면도기 포장 등 플라스틱을 가열 성형하여 움푹 들어간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물품을 넣고 개구부를 종이, 플라스틱필름이나 알루미늄박 등으로 덮고 주변부를 기재와 접착한 블리스터 포장 등이 많음

❍ 필름류

- 0.25㎜ 미만의 얇은 합성수지 재질의 막[4](莫) 포장재를 말함. 일반적으로 비닐이라고 말하는 포장재들이 필름류 포장재로, 식료품, 생활용품 등의 기본포장재와 주로 식품의 보존 등에 사용되는 랩 필름, 판매처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주로 사용되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 등이 있음
- 플라스틱 필름과 시트 간 구분의 경우, 경질염화비닐에서는 0.1㎜미만을 필름, 0.1㎜이상~0.8㎜미만을 시트, 0.8㎜이상을 판이라고 하고, 박물시트 성형업계와 포장업계 등에서는 0.25㎜미만을 필름, 0.25㎜이상~1.0㎜미만을 시트라고 부르기도 하는 등 차이가 있음

❍ 기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는 제품이 충격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'완충재[5]' 등이 있음

2. EU 포장재 정의 및 기준[6]

❍ 포장재란 원재료를 가공하여 유통한 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제품의 소개, 운반, 취급, 보호, 저장을 목적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세 가지 기준이 있음

- 첫째, 포장의 다른 기능을 침해하지 않고 포장재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품목은 포장재로 간주됨. 그러나 제품과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으며(an integral part of product), 물품의 전 생애에 걸쳐 그 제품의 보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, 모든 요소들이 함께 사용·소비되거나 폐기되도록 의도된 것은 제외함

· 포장재로 간주 : 사탕 박스(Sweet boxes), CD케이스를 포장한 필름

· 포장재 제외 : 화분, 연장박스, 티백, 치즈의 광택 층(wax layers)

- 둘째, 판매시점에 내용물이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품목과 판매시점에 내용물이 채워질 의도로 만들어 졌거나 팔리는 일회용품이 포장재의 기능을 한다면 포장재로 간주함

---

4) 한국산업표준(KS) 규격번호 KST1001-용어번호 2101, 플라스틱필름(plastic film)
5) 한국산업표준(KS) 규격번호 KST1001-용어번호 2327, 완충재(cushioning material)
6) 유리병 재활용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연구, (사)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(2011)

· 포장재로 간주 : 종이 혹은 플라스틱 운반 박스, 일회용 접시 및 컵, 식품포장용 랩(cling film), 샌드위치 가방, 알루미늄 호일

· 포장재 제외 : 일회용 칼, 커피 막대(Stirrer)

- 셋째, 포장재와 결합되어 있는 부속품은 포장재로 간주. 제품에 붙어 있거나 직접 매달려 있는 부속품(Ancillary element)은 포장재의 기능을 할 경우 포장재로 간주. 단, 제품과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으며, 모든 요소들이 제품과 함께 소비되거나 처분된다면 제외함

· 포장재로 간주 : 제품에 붙어 있거나 직접 매달려 있는 라벨

· 포장재 제외 : 용기뚜껑(the container closure)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마스카라 솔, 스테이플, 다른 포장품목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라벨, 비닐 커버(plastic sleeves), 세제뚜껑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계량컵

3. 일본 포장재 정의 및 기준

❍ 『용기포장과 관련되는 분별 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』(이하, 용기포장리사이클법)에서도 '용기포장'을 상품을 담는 '용기' 및 상품을 감싸는 '포장'(상품의 용기 및 포장 자체가 유상인 경우를 포함)으로 상품을 소비하거나 상품과 분리되었을 경우 불필요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함

❍ 일본 경제산업성의 용기포장리사이클법 해설자료에 나와 있는 용기포장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음

Table 1 용기포장의 재질·형상

유리 용기	■ 유리로 만든 용기(붕규산 유리 및 乳白유리 제외)	① 병 ② 컵형태의 용기 및 컵 ③ 접시 ④ (①~③)에 준하는 구조·형상을 가진 용기 ⑤ 용기의 마개·뚜껑류의 것
PET병	■ PET제의 용기(음료 또는 간장을 충전하기 위한 것)	① 병 ② (①)에 준하는 구조·형상을 가진 용기
종이용기 포장	■ 종이제의 용기포장(박스 및 음료용 종이용기 제외)	① 상자 및 케이스 ② 컵 형태의 용기 및 컵 ③ 접시 ④ 봉지 ⑤ (①~④)에 준하는 구조·형상을 가진 용기 ⑥ 용기의 마개·뚜껑류의 것 ⑦ 용기에 들어있는 상품의 보호 또는 고정을 위해 용기에 접착되었거나 용기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용기 ⑧ 포장

플라스틱 용기포장	■ 플라스틱제의 용기포장(PET 이외의 것)	① 상자 및 케이스 ② 병 ③ 통 ④ 컵형태의 용기 및 컵 ⑤ 접시 ⑥ 주름이 있는 시트형 용기 ⑦ 튜브형 용기 ⑧ 봉지 ⑨ (①~⑧)에 준하는 구조·형상을 가진 용기 ⑩ 용기의 마개·뚜껑류 ⑪ 용기에 들어있는 상품의 보호 또는 고정을 위해 용기에 접착되었거나 용기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용기 ⑫ 포장

※ 복수소재의 용기포장의 경우 용기포장을 구성하는 소재 가운데 중량기준으로 무게가 가장 무거운 소재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

Table 2 용기포장의 판단기준 및 주요 사례

용기의 사례	**▸내용물인 상품이 분리될 경우 불필요해지는 용기** ■ 과자 및 완구의 빈상자 ■ 신발 및 가전제품의 빈상자 ■ 포켓티슈의 봉지 ■ 립스틱 및 막대풀 상자 ■ 음료 및 일본된장 등의 멀티팩 ■ 담배 등의 오버락 ■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시에 주는 비닐봉투·종이봉투(유로일 경우 포함) ■ 백화점 등에서 판매시에 주는 증정용 상자(유료일 경우 포함) ■ 컵라면 수축팩 ■ 음료팩의 빨대봉지 ■ 도시락의 젓가락 봉지 등
포장의 사례	**▸내용물인 상품이 분리될 경우 불필요해지는 포장** ■ 백화점 등의 포장종이(유료인 경우 포함) ■ 생선식품 트레이 등을 감싼 필름랩 ■ 햄버거·카라멜 등을 싼 종이·필름 ■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을 포장한 스트레치 필름 ■ 서적판매시에 포장하는 커버(유료일 경우 포함) ※ 상품전체를 싸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면적의 1/2을 초과하는 포장재는 대상임. 야채묶음테이프 등은 대상이 아님
사회통념상, 용기 또는 포장으로 간주되는 것	**▸뚜껑·마개 등, 용기 및 포장의 일부분인 것** ■ 용기의 마개, 뚜껑 등(컵라면의 뚜껑·푸딩의 뚜껑) ■ 캡(에어로졸 캔의 오버 캡) ■ 샴푸 등에 부속되어 있는 펌프 및 노즐 ■ 이중 뚜껑 중 안쪽 뚜껑(액상화장품병의 안쪽 뚜껑) ■ 용기입구의 봉인 **▸상품보호 및 고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. 뚜껑 및 트레이에 준하는 것** ■ 부품용 틀 ■ 크레파스상자의 깔개 ■ EPS 완충재 ■ 상품을 싼 연질의 시트 및 네트 ■ 팩에 들어있는 딸기의 표층면과 버터의 표면을 씌운 필름 등 ■ 와이셔츠의 형태를 보호하기 위한 종이